

의안번호	제 243호
의 결 연 월 일	2023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

제 출 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출연월일	2023년 3월 24일

충청북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

의안
번호

243

제출연월일 : 2023년 3월 24일

제 출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「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」개정으로 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신설됨에 따라
-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포상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모범공무원 포상 추천(안 제2조)
 - 충청북도의회 각 담당관 및 전문위원이 추천
 -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 추천
- 포상 선발 규모(안 제3조)
 -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
 - 공적심의 결과에 따라 매년 3명 이내 선발
-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(안 제4조)
 - 「모범공무원 규정」에서 정한 수당액의 수당(5만원)
 - 선발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년간 지급
- 수당의 지급 중지(안 제5조)
 - 징계·직위해제 및 타기관 진출 시 수당 지급 중지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5.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청북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」 제4조에 따른 모범 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추천) ① 모범공무원은 충청북도의회의 각 담당관 또는 전문위원이 추천한다.

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, 추천 대상자의 행적, 직무내용,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.

③ 「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4조에서 정한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. 다만, 「모범 공무원 규정」 또는 조례에 따라 이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.

제3조(선발) 모범공무원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의회 공적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명 이내로 선발한다.

제4조(수당지급)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「모범공무원 규정」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수당액을 지급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당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하고,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.

제5조(수당지급의 중지)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

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.

1.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
2.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
3.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
4. 다른 기관으로 진출하였을 때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지방공무원법

제79조(표창)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.

□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

제4조(포상의 종류) ① 포상은 표창장, 감사장, 상장,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.

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0조(공적심사위원회)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.

② 위원장은 의회사무처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총무팀장으로 한다.

③ 공적심사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「충청북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」비용추계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가. 비용발생 요인 :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의 수당 지급

나. 관련 조문

- 안 제3조(선발) 모범공무원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명 이내로 선발한다.
- 안 제4조(수당지급)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「모범공무원 규정」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수당액을 지급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당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하고,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.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매년 3명 이내 모범공무원 선발
- 모범공무원 대상자 월 5만원, 3년간 지급

나. 연도별 비용추계표

(단위: 천원)

구분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6년)	계
모범공무원 수당	1,800	3,600	5,400	5,400	5,400	21,600

- 3차년도부터 매년 5,400천원 추계